

4. 日 省 錄 解題

全 海 宗

一 引 言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 그리고 備邊司謄錄과 더불어 日省錄은 李氏朝鮮이 남겨놓은 浩繁하고도 貴重한 歷史的 資料로서 높이 評價되고 있는 바이며, 우리의 先人們의 文化的 所產으로 國內·國外에 誇示할만 한 것이라는 事實에 대하여 異見이 없을 것이다.

上記한 記錄中에서 3種은 近來에 이미 出版이 完了되거나 또는 進行中에 있다. 즉 國史編纂委員會에 의하여 朝鮮王朝實錄이 全 48 冊으로 影印 出版되고 또 備邊司謄錄이 全 28 冊으로 影印 出版되었으며, 承政院日記도 또한 筆寫하여 影印 出版中에 있으며 그一部인 30餘冊이 既刊되어 史家의 研究에 至大한 便益을 주고 있어서 우리의 歷史의 樣相이 더욱 밝혀지는 同時에 先人們의 文化的 遺產이 內外에 讚揚됨은 實로 欣快할 바라고 하겠다. 위의 3種의 龍大한 日錄的 記錄과 並稱되는 日省錄이 이제 비로소 影印 出版됨은 뒤늦은 느낌이 있기는 하나 참으로 多幸한 일이다.

現存하는 日省錄은 英祖 36 年 庚辰(1760)에서 隆熙 4 年 庚戌(1910)에 이르는 150 年間의 記錄으로서 實錄이 約 500 年間의 記錄이며, 承政院日記와 備邊司謄錄이 各其 約 300 年間의 記錄임에 比하여 比較的 短은 年代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卷帙에 있어서 日省錄은 2,300餘卷의 龍大的 것이며 備邊司謄錄은 말할 것도 없고, 朝鮮王朝實錄의 總字數가 5,000萬字에 未達함에 比하여 이를 훨씬凌駕하고 있는 터이다. 그런 까닭으로 日省錄全帙을 一時에 出刊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現在 承政院日記의 出刊이 겨우 그 全帙의 5 分의 1에 未達하고 있는 事實에 비추어, 日省錄 中에서 그 出刊이 渴望되는 朝鮮王國 末期의 李太王 治世時(1863~1907年)의 560餘卷을 于先 出刊하기에 이르렀다. 이 卷數는 日省錄 全卷數의 4 分의 1에 該當하는 것이며, 이것을 大體로 年度別로 李太王 末年으로부터 年代의 逆

順에 따라 逐次로 刊行할 豫定이라고 한다.

二 撰修의 趣意

日省錄의 編纂이 正祖(在位 1776)에 의하여 비롯하였다고 함은 周知의 事實이다. 朝鮮王朝 後期의 英祖(在位 1724)와 正祖의 治下의 近 80 年間은 안으로는 膨渢한 氣運으로 自覺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清의 全盛期에 이룩된 漢文化의 刺戟을 받아서 그 英特한 君主들의 主導下에 많은 學人들이 輩出되어, 後世에 우리 先人們의 業績으로서 推仰되는 이른바 英·正期의 文化的 새 氣風을 이룬 時期였다. 日省錄도 이러한 새 氣風의 하나의 훌륭한 所產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日省錄은 一般的으로 日錄的 記錄으로 알려져 있으나, 單純한 日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그 書名이 表示하는 바와 같이 反省에 資하려고 하는 記錄이다. 이 點은 그 撰修의 趣意를 살펴보면 더욱 明白하여진다. 現存하는 日省錄은 第一冊은 「日省錄序」로 되어 있으며, 이 序文은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李福源이 正祖 乙巳(1785)에 撰한 것이라고 믿어지며, 約 1,000字의 그 序文 中에 日省錄 撰修의 目的이 言及되어 있다. 同序에 「史嚴而秘 古之史可見 今之史不可見也 監乎古不如察乎今 求諸人不如反諸身 此日省錄所以作也」

라고 하고, 또

「昨日之事 今日錄之 今日之錄 明日省之」

라고 하여 그 뜻을 밝혔다. 正祖의 弘齋全書에 引用된 原任閣臣 徐龍輔의 甲辰錄에도

「教曰 曾子日省之訓於學者 践歷之工 最爲切要 予自幼時 服膺乎斯訓 今之日省錄即此意也」(同書 卷161)
(日得錄一)

라고 하였다. 그런데 日省錄序에

「聖祖御製自省編 九十載躬行心得…本於一個省字 今此日錄名義 蓋有所受」라고 한 것을 보면, 正祖의 日省錄의 撰修는 英祖의 御製自省編을 본받은 바 많음을 알 수 있다. 御製自省編은 英祖 20年(1744) 英祖 51 歲時에 草本이 이루어지고 2年後에 定稿된 것으로서 内篇「自修之事」와 外篇「爲治之

事」의 2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즉 日省錄과 御製 自省編은 儒教的 德治를 理想으로 君主가 自省하기 위하여 撰修하였다는 點에 共通性이 있다.

그러나 御製自省編은 君主의 自省을 위한 金科玉條 約 二千言을 一時에 修撰한 것임에 대하여 日省錄은 150 餘年에 걸친 逐日의 史的記錄으로서 여기에 兩書의 差異點이 있다. 즉 日省錄은

「其記述之該詳 載錄之起纖悉 政院之起居注殆不及什一焉 蓋自臣僚晉接筵席酬對官師言事公車章奏 内而百司簿判 外而八道啓狀 麻小或遺 無不彙括誠鉅典也 廣記也 上起丙申至于今二十餘年 卷帙已爲六百冊之多」(日得錄五)

라고 한 바와 같이 朝廷과 内外諸官에 관련된 廣汎한 記錄이다.

日省錄과 並稱되는 承政院日記와의 關係에 대하여 日得錄을 보면, 이들兩書와 같은 性格의 記錄에 관한 唐의 故事を 말하고, 이어서

「自唐以來 中書置時政記 密院置內庭日曆……我朝 政院之有日記 內閣之有日省錄 亦此義也」(日得錄六)

라고 한 것으로서 그 差異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正祖 5年(1781)8月의 下敎에서 日省錄에 관하여

「凡例甚難 若不善成 則無異政院日記 何如則可」(正祖實錄 卷 12, 同 5年 8月 己丑)

라고 한 것으로 보아 記錄의 內容이 承政院日記와 特異할 바 없게 될 憂慮가 많았다.

三 起撰의 時期와 撰者

一般的으로 日省錄은 英祖 36年 庚辰(1760)에 시작되었다고 하며 現存하는 同書도 같은 해 正月에 비롯하고 있음도 事實이다. 그런데 日省錄序에 「始皆聖上手自箚記後 以屬內閣諸臣而筆削 亦經睿裁 起壬申至乙巳 總百有幾卷」

이라고 하여, 正祖가 親히 雜錄한 것을 基礎로奎章閣의 諸臣이 筆削한 후 國王의 裁可를 받았던 것이며, 壬申(1752)에서 乙巳(1785)까지 100餘卷이 되었다고 한다. 日省錄이 正祖의 每日의 手記를 基礎로 한 것이라고 하면 壬申年에 시작하였다는 記錄은 믿을 수 없다. 즉 壬申年은 正祖의 生誕年이며 生年부터 記錄을 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點에 관하여 實錄에 所重하고

正確한 記錄이 있다.

즉 正祖 9年(1785) 7月 丁丑에 「命諸閣臣承旨玉堂等 編成日省錄 上自在春邸有日錄 記言動事 爲以備觀省之資 是爲尊賢閣日記也 至是命諸臣起自壬申誕降後至尊賢閣日記以前 復自丙申御極以後至甲辰 取起居注所載諸司掌故 及尊賢閣日記繫日紀事 立綱分目 乙巳以後 繼此編摩使閣臣當直者掌其事 取曾子曰三省吾身之義命其書曰日省錄 至庚申 凡 六百七十五冊」(正祖實錄 卷 10)

이라고 하였다. 즉 正祖 9年(1785) 7月에 奎章閣·承政院·弘文館의 臣諸에게 命하여 日省錄을 編纂하였는데, 正祖의 生年부터 시작하였고, 1759年世孫이 된 以後는 尊賢閣日記에 根據하였으며, 1776年 登極後 1784年 甲辰까지는 起居注에 依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좀더 推究하여 볼 문제가 있다. 日省錄序에서도 日省錄의記事가 壬申(1752)에 작시하였다고 한 것은 本文에서도 合致되나 本文에 庚申(1800)까지 675冊이라고 한 것은 現在奎章閣에 所藏된 日省錄이 庚辰(1760)年에 시작하여 1800年 正祖의 昇遐時까지 676冊(第一冊은 上記)이라는 事實과 一致함에 비추어, 이미 當當時에 1760年 以前의 分은 日省錄에 包含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正祖 生年부터의 日省錄이 編纂되기는 하였으나 後日의 記錄만큼 整備되지 않았던 까닭으로 1759年까지의 分은 除外된 것이라고 밀여진다. 事實 그 後의 日省錄도 正祖의 即位 前年까지의 分은 即位 以後의 分에 比하여 大體의 體裁는同一하나, 그 卷帙이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적다. 즉 即位前의 每年の卷(冊)數는 1760年에서 1774年까지는 1卷(冊)乃至 2卷, 1775年分이 5卷, 따라서 都合 16年間에 29卷에 不過하다. 그 反面에 正祖 即位 後 隆熙年間까지 每月 적에도 1卷이며 특히 正祖 在位中에는 月 平均 2卷이 되는 것이며 이 點에서도 後日에 遷及 編纂한 部分은 粗略을 免치 못함을 알 수 있다.

日省錄의 撰修 擔當者에 관하여는 前引 日省錄序와 正祖實錄에서도 言及되었거니와, 日省錄凡例에 仔細히 記述되어 있다. 日省錄凡例는 純祖 丁亥(1827)에 當時の 檢書 柳本藝가 撰錄한 것으로서 同書序에

「正廟朝初年 有御撰日記 曰日省錄 己亥設內閣以後 仍命閣臣代撰成書 而其

出艸則入直檢書掌之 每日收輯諸文書艸後 閣臣監正之」

라고 하였다. 즉 正祖는 처음에는 親히 日省錄을 撰하였으나 奎章閣의 設置以後는 閣臣이 代撰하였으며 특히 出草는 入直檢書가 맡았던 것이다. 上記引用文에 己亥(1779)에 内閣을 設置하였다 함은 概括的 表現으로서, 正確하는 正祖 即位年(1776)에 奎章閣이 設置되고, 己亥年에는 檢書가 비로소 任命되었던 것이다.

檢書도 每日의 草本을 每 5日마다 正書하여 入啓하는 것이 原則이었었는데, 純祖時로부터 承政院日記와 같이 每月分을 翌月 20日에 入啓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且 漏落이 있어서 補充을 要하는 경우에는 翌年 正月에 請出하여 追補하였다(日省錄凡例「雜錄」).

日省錄이라는 書名이 確定된 것은 正祖 5年(1781)의 일이라고 믿어진다.
上引 正祖實錄 卷 12(8月己丑)에

「凡例甚難 若不善成 則無異政院日記 何如則可」

라고 한데 이어서

「沈念祖對曰 題目則曰日省錄·月計錄 而合編大題目則統名之曰日月通編 則似好矣 教曰 古亦有日月錄·編年錄題目 不可襲用矣」

라고 한 것으로 보아, 書名에 대한 論議가 있었으나, 決定을 보았다는 記錄은 없다. 그러나 同實錄 同卷(12月乙亥)에

「召見校正諸臣 閣臣沈念祖·兵曹參判鄭昌聖 承命校正日省錄」

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上記 論議에 이어서 書名이 定하여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四 内容과 體裁 및 卷帙

初期의 日省錄을 後期의 日省錄과 比較하여 보건대 비록 簡詳의 差는 있으나 그 體例는 거의 一貫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體例가 어떠한 것인가를 考察할 때에 특히 想起되는 것은 承政院日記와의 異同인 바, 日省錄凡例에서 이 點이 詳述되고 있다. 同書序에 上記 引用文에 이어서

「其法 每一事必立綱係目 刪繁而取要惟 絲綸批判則全錄 而諸臣奏啓文字無不刪抄 比諸政院日記 文省而事詳 實合於記事者必提其要矣 如春官之儀

注・道臣之狀啓・還給之上疏・金吾秋曹之囚供及殺獄案・上言鳴錚之啓・事大交隣文字・使行聞見別單 則政院日記中所不載 而獨載於日省錄 必書姓名 採其事實 入於挾注 窪說則事尤秘焉 注書所記 閣臣親自刪折以上 其詳且備 有如此者…每月成一卷或二卷 繕寫粧潢以進」

이라고 하여 日省錄 撰修의 體例를 말하고 있다. 즉 每事마다 要目을 세워서 簡潔하게 記述하고, 國王의吩咐나 裁可는 全文을 採錄하되 禮官의 儀注, 地方官의 狀啓와 其他의 文書로서 承政院日記에 記載되지 않은 것도 日省錄에는 記載되며, 窪說도 注書의 記錄한 바를 閣臣이 筆削하여 國王께 올리며 每月 1冊 또는 2冊을 淨書 製冊하여 進上하기로 되어 있다. 簡潔하게 記述하는 方法을 例示하면 「依爲之及依回啓施行」은 「從之」로 簡記(同書「立」)하며, 「出草時 當日內事端 不可先後倒錯」이라고 하였으나, 一方 事實의 内容에 따라서 「所敬爲先」이라고 하여 天文·祭享·臨御召見 등 順序 즉, 天·國王의 祖上·國王·臣僚에 관한 事實의 順序로 分類하여 記述하였다.

日省錄凡例에 의하여 分類의 順序를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 天文類
- 祭享類
- 臨御召見類
- 頒賜恩典類
- 除拜遞解類
- 疏箇類
- 啓辭類
- 草記書啓別單類
- 狀啓類
- 科試類
- 刑獄類

日省錄凡例에는 上記 各類에 대한 具體的 例를 列舉하여 日省錄의 記述法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日省錄 編纂의 初期로부터, 이와 같이 周到한 體例가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柳本藝가 正祖 初의 四檢書의 一人이었던

그의 父 柳得恭의 進言이라고 하여 引用한 바에 의하면 「日省錄 隨事編纂不必有一定之例」(同書序)라고 한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日省錄의 撰修가 계속됨에 따라서 그 體例가 定하여져 갔으며, 父子 二代의 檢書였던 柳本藝가 凡例를 撰함으로써 더욱 固定되었던 것이다. 事實 同凡例에는 「舊例書今例不書帙」이라는 篇目이 있어서 正祖時와 純祖時의 記述의 差異를 列舉하고 있다.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正祖 即位以前의 記錄은 그의 世孫時의 日錄인 尊賢閣日記에 基礎한 것이기는 하나, 日省錄의 記述은 正祖를 中心으로 한 것이 아니며 英祖를 中心으로 한 것이다. 즉 當時의 記錄의 大部分이 英祖의 臨御召見·課講에 관한 것이다.

正祖 以後 日省錄은 每日 編纂되어 朝鮮王朝 末年까지 이르고 있다. 1902年 1月 이후 記錄이 없는 日字도 있다. 用語는 勿論 漢文이며, 光武末年以後 若干의 國漢混用文(특히 詔書)이 混入되어 있으나 亦是 漢文이 中心이 되고 있다. 그리고 建陽元年(1896年)以後 陰曆과 陽曆을 併記하고 있으나, 册次·表題등은 陰曆을 基準으로 記述하고 있다.

다음에 時期別 卷數와 缺卷을 表示하겠다.

時　　期(年代)	冊數	缺卷 및 備考
正祖即位以前(1760~1775)	30	「序」1卷包含·年平均 2卷未滿 正祖時까지 共 676 冊, 癸丑(1793) 3月下缺卷
正　　祖　時(1776~1800)	646	年平均 25 卷餘, 月平均 2 卷
正祖時「別編」		自壬子至庚申(1792~1800) 狀啓類
純　　祖　時(1800~1834)	637	月平均 1.5 卷, 但 癸酉(1813)以前 月平均 2 卷, 甲戌(1814)以後 月平均 1 卷強
憲　　宗　時(1834~1849)	199	己亥(1839) 1月~7月缺, 月平均 1 卷強
哲　　宗　時(1849~1863)	220	壬戌(1862) 5月缺 月平均 1·3 卷
李太王時(1863~1907)	562	下記缺(1876年 5月, 1882年 1月, 83年 1月, 86年 12月, 93年 12月, 95年 4月, 97年 2月, 97年 10月, 97年 12月, 98年 2月, 1900年 9月, 1901年 2月) 月平均 1 卷強

李 王 時(1907~)
(1910) 33 每月 1 卷

計 (1760~)
(1910) 2,329 純祖時 缺 1 卷 包含，其他 缺本 除外

上記한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正祖 即位 以前에는 年 1 卷 乃至 2 卷이었으며，正祖年間과 純祖初年에는 每月 平均 2 卷이었으나，그 後는 每月 1 卷이 原則이었다. 每卷이 적은 것은 四十葉 程度에서 많은 것은 二百葉에 達하며 半葉 10行，每行 20 字로 楷書가 大部分을 차지한다.

五 史料로서의 重要性

過去의 傳統的 歷史記錄이 王朝中心 乃至는 治者中心이었다는 一般的 非難은 實錄이나 承政院日記와 더불어 日省錄에도 該當되는 것이다. 德우기 日省錄 編纂의 動機가 君王의 自省에 큰 比重을 두고 있었다는 事實，즉 日省錄의 母型은 正祖가 一方으로는 文字를 解讀하기 시작하였을 무렵에 그 祖父인 英祖의 撰著인 御製自省編을 閱讀하였을 것이며 그와 同時に 儒家의 修己의 方法인 日記를 記錄함으로써 이 兩者가 結合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分明하므로 日省錄은 純粹한 歷史記錄이라고 하기 보다는 修己를 위한 記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도리켜 생각할 때 東洋 특히 中國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史的 記錄이 王朝나 治者를 中心으로 하였다고 하여 그 史料로서의 價值를 過少評價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治者 中心의 日錄은 만 아니라 正統的 歷史記錄의 大部分이 治者의 「反省」乃至는 「龜鑑」으로서 叙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日省錄 編纂의 趣意는 儒家의 正統的 歷史觀과 相通하는 것이며 史的 記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日省錄을 다른 日錄의 記錄과 比較하여 볼 때 一長이 있음을 發見한다. 첫째로 歷代의 實錄은 新王이 前王의一代의 記錄을 纂修한 것이며 日省錄은逐日의 記錄을 根據로 每日 또는 每月一次 整理하는 것이므로 後者가 더욱根本的인 史料라고 할 수 있다. 이 點에서는 承政院日記가 日省錄과 共通되는 點이 있으나，前述한 바와 같이 承政院日記에 記載되지 않은 많은 記錄이 日省錄에 記載되었고，承政院日記의 記錄은 散慢한데 比하여，日省錄은 分類 整理되어 있기 때문에 利用에 便하다. 德우기 李氏王朝 末期의 대

하여는 日本人 學者들에 의하여 編纂된 高宗實錄·純宗實錄은 曲筆을 免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이 時期의 承政院日記의相當한 部分은 燒失로 因한 改修日記로서 그 改修時에 日省錄이 重要的 參據資料였다는 事實에 비추어 보아도 日省錄이 史料로서 매우 重要하다 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그리고 現在 承政院日記의 刊行이 遲延되고 있는 터에 日省錄의 刊行은 이 方面의 研究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李氏王朝 末期의 史料로서 때로는 너무나 簡略하게 記述된 部分도 있으나, 總體的으로 日省錄이 다른 正統的 史的 記錄 보다도 더욱 貴重하다고 생각되는 까닭으로 日省錄의 影印 出版을 下代로 부터 年代的 逆順으로 出刊하는 바이라고 믿는다.

1967年 7月

〈筆者：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教授〉